

의안번호	2214283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6.1.5.
추 계 번호	25B614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3억 3,000만원(연평균 6,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66	66	66	66	66	330	66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4조의2 신설 (공공개발토지 재구조화심의위원 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 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 를 둠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제13조의2 후단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기한의 연장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34조의3 신설 (공공개발토지 재구조화심의위원 회의 구성)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 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함. 이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의무규정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수 있음(제2항)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토지 또는 재조정구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안 제34조의4 신설 (공공개발토지 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재구조화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4조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34조의3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 심의위원회의 구성)	○	• 국토교통부 내 유사 위원회 사례를 바탕으로 추산

	및 안 제34조의4(공 공개발토지재구조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재구조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산에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위원회의 회의일수와 참석수당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재구조화위원회 위원구성 및 개회일수는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함
 - (유사사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심의
 - － 위원수: 33명(공무원 7명, 민간위원 26명)
 - － 개회일수(연간):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간 회의일수는 평균 11회

[표 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연간 개최일수: 2020~2024년

(단위: 일수)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출석회의	5	10	5	5	6	31	6.2
서면회의	2	2	4	5	9	22	4.4
합계	7	12	9	10	15	53	10.6

자료: 국토교통부,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운영내역” 각 년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재구조화위원회: 위원장 1인, 공무원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 － 위원수: 위원 25명 중 회의참석수당등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은 20명, 공무원인 위원 5명으로 가정(유사사례의 민간·공무원위원 비중(8:2)을 적용)
 - － 개최일수(연간) : 11회로 가정
- 재구조화위원회는 연간 11회 개최하며 회의참석수당 등은 여비, 사전안건검토수당을 포함하여 1명당 30만원¹⁾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이상의 가정에 따라 추계한 결과, 재구조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20	20	20	20	20	—
지급단가(b, 백만원)	0.3	0.3	0.3	0.3	0.3	—
회의일수(c, 회)	11	11	11	11	11	—
합계(a×b×c)	66	66	66	66	66	330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2025.)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